

# 창업동아리 운영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 창업교육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에서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·관리하여 창업 실천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창업동아리 발굴 및 지원·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하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백석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칙」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정의)** 본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창업동아리”는 창업활동에 적극적인 백석대학교 재학생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동아리를 말한다.
2. “운영비”라 함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.
3. “창업동아리 활동평가”라 함은 운영되고 있는 창업동아리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.

**제4조(등록요건)** 본 대학 창업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창업동아리는 본 대학의 재학 중인 대표학생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2. 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.
3. 창업동아리 회원 자격상실은 졸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5조(신규 및 재등록)** 창업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창업동아리 신청서 및 창업동아리 소개서 [첨부1, 2-1]
2. 창업동아리 회원명단 [첨부2-2]
3.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 [첨부3]
4.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[첨부4-1, 4-2]
5.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승낙서 [첨부4-3]
6. 창업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 [첨부 8]
7. 창업동아리 변경 신청서 [첨부 9]

**제 6조(지도교수)** ① 각 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를 두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수 1인은 2개 이하의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는 창업동아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

③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교원 교수업적 평가항목 중 학생활동 지도, 창업동아리 지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**제7조(승인)** ①제5조에 의하여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창업동아리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창업동아리로 인정한다.

1. 창업동아리 선정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2.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실무위원 외에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.
3. 교내 창업관련 대회 입상자,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 수상자, 기타 창업관련 외부 대회 입상자가 결성한 창업동아리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등록변경)** 등록된 창업동아리의 팀명변경, 팀원변경, 지도교수 변경 등 창업동아리등록사항에 주요변동이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“창업동아리 변경신청서(첨부10)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원)** 창업동아리에 대한 재정 및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동아리 운영경비는 창업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회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각 창업동아리별 평가를 통하여 내용별, 유형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2. 창업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, 재료비, 회의비, 마케팅비, 시제품제작비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기본적인 운용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3. 본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4. 창업동아리실(학생창업공간)을 무상 지원한다.
5. 외부 경진대회 및 지원 사업 연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6. 기타 지원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10조(재정)** ① 창업동아리 재정은 지도교수 또는 창업동아리 대표 명의의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창업동아리 및 지도교수들에 대해서는 포상 및 재정적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원금 지원 대상 창업동아리는 센터가 제시하는 지원금 집행 및 정산기준에 맞춰 운영·정산하여야 한다
- ④ 지원금 지출내역 및 관리는 창업동아리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1조(동아리 활동)** ① 창업동아리는 매년 말 “창업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[첨부8-1]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동아리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, 특히 학내·외 행사 및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  1. 창업교육 교과목 수강 및 교내·외 창업 관련 행사 참여
  2. 대내·외 전시회 출품
  3. 관련 기관 주최 각종 경진대회 참가
  4. 중소기업청 주관행사 참여 활동
  5. 관련 산업체와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참여
- ③ 행사 시행에 따른 각종 유인물 및 간행물의 발간 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동아리실 사용)** 선정된 동아리들은 학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아리실의 청결 상태 유지
2. 주류반입 및 음주 금지
3. 불건전한 놀이 행위 금지
4. 전열기구 사용금지
5. 동아리실내의 취사 및 숙박 금지
6. 기타 동아리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금지

**제13조(등록 인증 취소)**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동아리 등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 학칙, 센터 내규와 창업동아리 회칙의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
2. 1년간 행사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경우
3. 활동실적 미제출, 보고의무 위반, 정산서 미제출 등 보고사항을 미이행 하였을 경우
4. 센터의 사전 허락없이 창업동아리실의 구조 및 시설물 변경, 파괴, 도난된 경우
5.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
6.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

**제14조(지원금 환수)**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본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
2. 센터가 제시하는 지원금 집행 및 정산기준에 맞춰 운영·정산하지 아니한 경우
3.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
4. 지출관련 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
5. 사업기간 종료 후 미집행 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
6. 기타 창업교육센터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5조(세부사항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